

대구지방고용노동청(공시송달)공고 제2023-35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'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4. 3.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및 5년간 재참여 제한
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김O협	98.05.19.	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1-8	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	'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'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	1)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'23. 03. 21) 2)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할 것. 3)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 내용대로 처리함.

4. 공고기간 : 2023. 4. 3. ~ 2023. 4. 2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경산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손은철(Tel. 053-667-68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